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시·도지사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 강화가능 범위 명확화〉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307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시·도지사가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을 강화할 수 있는 범위 명확화	3
[참고자료]	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6. 11.
3. 회 부 일 : 2024. 6.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음.

그러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은 정했으나,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은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시·도지사가 해당 수산자원에 대하여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로 하여금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사항에 한정하여 그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 해석상의 혼란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Ⅲ. 검토의견

1. 시·도지사가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을 강화할 수 있는 범위 명확화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사항에 한정하여 그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4조제4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포획·채취금지) ① ~ ③ (생 략)	제14조(포획·채취금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u>제1항의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u>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 -----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사항에 한정하여 그 규정-----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포획·채취금지 제도를 보면, 현행법 제14조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제5항) 있으며,

제14조제4항은 시·도지사도 하여금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같은 조 제1항의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한편,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¹⁾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구역 및 수심, 체장 또는 체중의 제한을 규율하면서, [별표 1]로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을, [별표 2]로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을 정하고 있음.

1)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포획·채취금지)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구역 및 수심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은 별표 2와 같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포획금지 수산물]

포획금지기간 (17종)	연어, 전어, 옥돔, 명태, 삼치, 붉은대게, 대하, 새조개, 꼬끼리조개, 가리비, 넓미역, 우뚝가사리, 톳, 해삼, 낙지, 주꾸미, 참문어
포획금지체장· 체중(18종)	참가자미, 용가자미, 기름가자미, 돌돔, 참돔, 넙치, 농어, 도루묵, 민어, 방어, 볼락, 붕장어, 조피볼락, 갯장어, 미거지, 청어, 기수재첩, 대문어
금지기간·금지 체장 동시적용 (16종)	대구, 문치가자미, 쥐노래미, 참홍어, 참조기, 갈치, 고등어, 말쥐치, 감성돔, 꽃게, 대게, 소라, 전복류, 키조개, 오분자기, 살오징어

□ 그런데, 이 경우 시행령 [별표 2]에서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은 정했으나 [별표 1]에서 해당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은 정하지 않은 수산자원에 대하여도 시·도지사가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에 대한 강화된 규정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혼란이 제기되고 있는바, 개정안은 이를 해소하려는 취지임²⁾.

□ 법제처는 이와 관련된 법령해석 결과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제5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에서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구역·수심 또는 체장·체중을 정한 각각의 기준의 한도에서 시·도지사가 이를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법제적으로 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법령정비 권고를 한 바 있음.

2) 예를 들어 대문어의 경우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체중(600g)은 정해져 있으나 포획 금지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음.

□ 이에 개정안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사항에 한정하여 시·도지사가 그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으로, 집행과정에서의 혼선 해소 취지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여짐.

문 의 처
02)6788-5422